

변 경 대 비 표

■ **펀드명** : 하나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혼합]

■ **변경효력발생(예정)일** : 2026 년 09 월 29 일

■ **변경사유** : 모투자신탁 삭제(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

■ **신탁계약서 변경사항**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 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모투자신탁 삭제	①~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-(생략)-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2. 하나 그레이터코리아증권모투 자신탁[주식] 3.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④ (생략)	①~② (좌동) ③이 투자신탁은 -(좌동)-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삭제) 2. 하나 그레이터코리아증권모투 자신탁[주식] 3.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④ (좌동)
제 18 조(투자대 상자산 취득한도)	모투자신탁 삭제	집합투자업자는 -(생략)-따른다. 1. 제 3 조제 3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 2~3. (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-(좌동)-따른다. 1. 제 3 조제 3 항 (삭제) 제 3 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 상으로 한다. 2~3. (좌동)

■ **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**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목적 및 전략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	(삭제)

■ **투자설명서 변경사항**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			

투자목적 및 전략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	(삭제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운용전문인력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	(삭제)
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	(삭제)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	(삭제)
9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	(삭제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 (세전기준)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모투자신탁 삭제	하나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	(삭제)